양형위원회 토론회 결과보고

2008. 6. 16.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양형위원회 토론회 결과보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Ⅰ. 토론회 개요

○ 명칭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8. 6. 16. 14:00 ~ 19:00

○ 장소 :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 참석 : 양형위원회 위원 11명, 전문위원 9명, 법관 21명, 검사 9명, 기자 20명 포함 총 125명

Ⅱ. 진행순서

○ 개회식

○ 주제발표

▸ 사회자 : 상임위원

▸ 발표자 : 손철우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
이호중 전문위원

○ 토론 및 질의

▸ 토론자 : 김현철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신주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명건 기자(동아일보)
이현종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Ⅲ. 토론 및 질의

1. 이호중 전문위원 주제발표 관련

가. 김혜정 토론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개별범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양형기준은 제도 도입의 목적에 반하므로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 설정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격자형과 서술형의 장점을 취하고자 발표자가 주장한 혼합방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 제시

○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

▸ 많은 범죄유형의 양형기준을 일시에 설정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나. 박근용 토론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망라형과 개별형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개별형 모델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발표자 견해와 같이 서술형이지만 가중, 감경사유별로 가중, 감경 정도를 세분화하게 되면 결국 격자형과 유사한 서술형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 제시

○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

▸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에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은 시행 착오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2. 이주형 전문위원 주제발표 관련

가. 이현종 토론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망라식 격자형 기준은 미 연방과 일부 주(州)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모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를 경우 범죄별로 양형요소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고, 양형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위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

▸ 미 연방의 경우, 양형기준 시행 이후에도 판사의 양형재량이 검사에게로 넘어갔을 뿐 양형편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의견 제시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범죄별로 양형요소가 동일한 가중·감경치를 가질 수 없으므로 발표자의 계량화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

▸ 합의라는 양형인자를 계량화하는 한 가지 경우만을 상정하더라도 일부 합의된 경우나 공탁된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한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계량화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 제시

나. 최승재 토론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망라적 모델에 따를 경우 개별범죄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개별적 서술형 방식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개별적 서술형 모델에 따라 형량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충분하지, 망라적 격자형 모델을 도입하기 위하여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발표자 견해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
- 양형재량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판사가 가지는 본질적 권한 중의 하나로 헌법적 기초 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권고적으로 제시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기타

- 미국의 전 법무장관 애쉬크로프트(Ashcroft)가 대테러 전쟁 시의 법관의 양형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도하려다가 무산된 사례를 들면서, 법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3. 손철우 전문위원 주제발표 관련

가. 김현철 토론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양형에 대한 불합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라적 기준제가 최선이며, 망라적 기준제에 의하더라도 범죄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매뉴얼을 상세히 보완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에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계량화 방안을 택하더라도, 형량범위를 넓게 설정하거나 판사에게 등급 자체를 몇단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발표내용과 같이 법정형을 세분화하는 방안 정도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양형편차 해소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의견 제시

○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

▸ 주요 범죄들 상호간에 경중을 비교하고 기본 범죄수준이 도출되도록 하려면 가급적 많은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나. 신주영 토론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양형기준제를 채택한 이상 양형의 적정성보다는 균등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개별적 모델이 망라적 모델보다 필연적으로 양형의 적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발표자의 견해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같은 취지에서, 양형인자의 계량화를 통하여 양형의 투명화와 균등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양형기준제 도입의 목적은 일응 달성되는 것이므로 계량화에 동의한다는 의견 제시

4. 자유토론(이명건 기자)

○ 이주형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

▸ 미 연방식 양형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기준형량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나 상향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 미 연방의 경우 25%룰, 의무적 최소형량제도(mandatory minimum) 등이 있어 양형이 엄격하게 되었음. 우리가 미 연방식 기준에 따를 경우 지금보다 형량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현재의 양형실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 손철우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

▸ 양형기준의 계량화가 검사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발표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을 구함

☞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검사 양형재량의 지나친 확대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재판과정에서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양형인자를 장악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

5. 방청객 질의

○ 이호중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

▸ 장점을 얻어내기 위한 혼합방식이 오히려 단점만을 노출하게 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법 제56조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하게 혼합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답변